

전자상거래상의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규제에 관한 연구

김 정 곤*

A Study of Regulating Internet Escrow Services in Electronic Commerce

Jeonggon Kim*

Abstract

As with the fast spread of internet uses in recent years, electronic commerce has evolved. The proliferation of electronic commerce has increased diverse forms of fraud cases since internet helps intended criminals remain anonymous. In absence of effective tools to warrant the reliability of parties offering products or services through electronic commerce, consumers have to absorb damages unfairly.

Internet escrow service has been considered to be an option to establish reliability between buyers and sellers and to protect consumers from possible fraud cases. However, like other industries, fraudulent escrow services have appeared in internet.

This study has been intended to analyze fraudulent internet escrow services and to propose an effective regulatory system of internet escrow services. To do that, this study benchmarked the regula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primarily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escrow company, regulation of escrow business, and remedies for wrongdoing, so Korea can consider the adoption of similar systems.

Keywords : Escrow, Internet Escrow Service, Regulation

I. 들어가는 말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형태의 전자상거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더라도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신뢰가 밀바탕에 깔리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곧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직접 사람을 대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특히 먼저 결제를 하고 (선결제) 나중에 상품을 보내는 방식의 (후배송) 사이버쇼핑몰이나 인터넷 경매사이트, 멀리 떨어진 해외 바이어들과의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와 물품인도에 대한 신뢰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거래를 보호하여 주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시스템적으로 보장해주는 도구의 등장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이해 당사자들 중간에서 대금결제와 물류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internet escrow service) 서비스이다 [김신곤, 2002].

에스크로 (escrow)란 원래 법률용어이다.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 (條件附讓渡證書)로 정의된다.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를 다시 풀이하자면 ‘매매보호 서비스’로 해석할 수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만나지 않고 거래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불이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자 (trusted third party)가 상품대금을 대신 받아서 보관하다가 서로의 거래가

원만히 이뤄졌음을 확인하고 대금결제를 해주는 서비스이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3의 에스크로업체에게 결제와 물품인도 보증서비스를 맡길 경우, 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에스크로업체 사이트에 상품의 종류와 가격, 결제방법 등 거래정보를 통보하고 상품대금을 에스크로업체에게 입금하면, 에스크로업체는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이 입금되었음을 통보하고 배송을 지시한 후에 일단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이 아무 이상 없이 배달될 때까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때 에스크로업체는 상품이 아무 이상 없이 배달됐음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한다. 거래가 아무런 문제없이 완결됐을 때 에스크로업체는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으로부터 혹은 어느 한 쪽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거래하기로 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경우 구매자는 반품을 할 수 있으며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는 사이버쇼핑몰이나 인터넷 경매와 같은 기업과 소비자간 (B2C) 거래 뿐만 아니라 e-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기업간 (B2B) 거래를 진행할 때에도 공신력을 가진 금융기관이 B2B로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주고, 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당사자들간의 지급결제를 보증해줌으로써 기업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경우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에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장점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장점은 첫째는 매매 행위의 신뢰성을 높여 준다는 것이다. 온라인 거래는 익명의 상태에서 거래자간의 신용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물품거

래를 하는 경우에 구매자는 "원하는 물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고 나면 "물품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의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판매자에게 물품배송 요청을 하고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주므로 양측 모두 안전하게 거래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즉, 에스크로 서비스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돈을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므로 매출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비대면 거래에 따르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둘째는,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가 판매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구매자의 물품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배송을 하므로 대금 지급을 완벽하게 보장 받을 수 있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주므로 판매자가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다. 또한 거래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에스크로 사업자를 통하여 주문의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며 고객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여준다 [김신곤, 2002].

셋째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구매자에게 주는 혜택은 구매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물품을 먼저 검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구매자가 새로운 판매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며 거래의 위험을 제거하여 거래를 신속히 진행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주문의 진행 상황을 24 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간에 관계없이 고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판매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김신곤, 2002].

넷째는, 다양한 지급 결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용이 가능한 지급 결제 수단은 현금, 수표 등으로 제한되

어 있지만 에스크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업체가 제공하는 모든 지불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사이버 머니 등의 다양한 지불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

2.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단점

현재까지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는 기업간의 거래 (B2B) 보다는 경매와 같은 개인간의 거래 (C2C)나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 (B2C)에 집중되어 있다. 에스크로 업체가 거래에 개입하여 생기는 거래 절차의 복잡성과, 에스크로 수수료, 환불 처리 때의 지연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 당사자들이 이용을 꺼리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거래 절차가 더욱 간결해지고 사용자들이 복잡한 거래절차를 느끼지 않도록 투명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둘째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은 상품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구매승인 지연에 따른 전자상거래 업체의 자금 회전에 관한 압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한 후에 구매자가 상품에 이상이 없다는 구매승인을 에스크로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에 판매자는 에스크로 사업자로부터 상품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에도 구매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내의 경우 7일) 자동으로 에스크로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negative acknowledgement). 이것은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규모이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면 자금 회전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에스크로 사업자는 업무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정성원외 2인, 2003].

3.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의 선결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자상거래 자체의 활성화이다.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가 원초적으로 비대면성, 익명성, 선결제, 후배송의 특성을 갖는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간의 거래보다는 기업간 거래나 국가간 거래 같은 규모가 큰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클 것이다.

두 번째로 에스크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적절한 결제수단의 개발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금 결제수단인 현금이나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은 기업간의 전자상거래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이러한 것이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이러한 기업간 거래에 적절한 지급 결제 수단이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세 번째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신뢰성 문제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 업체에 공신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에스크로 업

체의 자격 요건, 제도적인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여 에스크로 업체에 공신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신력의 부여는 소비자를 에스크로 업체의 사기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II.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규제의 필요성

1. 국내의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규제의 필요성

전자상거래 시장에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징인 비대면성, 익명성, 선지불, 후배송으로부터 생기는 피해를 줄이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2003년도의 인터넷 쇼핑몰 수는 3000개를 넘어선 상태이고 이와 관련된 사기 피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업체나 쇼핑몰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2003년 4월에 제출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제3자 매매 보호 장치 (에스크로), 공제조합 가입 가운데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명시하였다 [전자신문, 2003a]. 그러나 쇼핑몰 업체는 공제 조합은 물론 보상 보험이나 에스크로 역시 비용부담만 가중시키고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법률개정안은 연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내의 옥션 등과 같은 경매업체에서는 이미 자체 회원을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신문, 2002] 경매업체 이외에

도 KCP 같은 PG (Payment Gateway) 업체 [전자신문, 2003c], 그리고 우리 은행 [전자신문, 2003b], 하나은행 및 제일은행 등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이며 [전자신문, 2004b] 산업계에서도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매출신장을 위하여 에스크로 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국내의 대다수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와 같은 매매 보호 장치를 실시할 것으로 예측 된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에스크로 서비스 도입에 대한 신뢰성 저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원외 2인, 2003]. 이것은 에스크로 서비스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중개인으로서 양쪽 모두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의 상품 대금을 보호해야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품 대금을 보관하는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으로 인식되어 많은 수의 부실한 에스크로 서비스 업체가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공신력을 잃게 되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이 국내에서는 아직 에스크로 서비스가 구매자의 사기와 관련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으나 불법적인 비리에 관련된 경우는 있었다. 에스크로 서비스의 난립과 이로 인한 에스크로 서비스 질의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이나 공신력 저하에 대하여서는 심각하게 논의되거나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에스크로 서비스의 질의 저하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에스크로 서비스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저하한다면 아무리 인터넷 쇼핑몰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의무화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규제를 통한 에스크로 서비스 자체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내의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규제 현황

저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에스크로 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법으로 제정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내에서도 에스크로 서비스가 증가하고 에스크로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없다. 국내에서 최근에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아니지만 에스크로 서비스가 인증심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자신문, 2004a]. 국내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인증제인 ‘e트러스트’를 주관하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http://www.kiec.or.kr>)은 2004년 초부터 전자상거래 인증에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제도인 에스크로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인증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1999년부터 산업자원부지원아래 시행되고 있는 e트러스트 인증제의 기본 취지가 소비자보호와 사이버 몰의 신뢰성 향상에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인증심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인증 심사 도입 결정을 앞두고 법률, 상거래, 금융서비스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평가단을 모집해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진흥원 내부에 이 서비스 접목을 추진할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현재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인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통 세부 평가항목을 마련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에스크로 도입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에스크로의 입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에스크로 사업자의 규모 등의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국내에서도 에스크로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는 기틀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8].

III. 미국의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규제

1. 미국의 에스크로 서비스 피해

최근까지 에스크로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규제나 제재를 받아오지 않았다 [35]. 그러나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부족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전자상거래가 원활이 끝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위장하여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는 가짜 에스크로 서비스 회사가 생기면서 에스크로 서비스의 규제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중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물류업체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배달 직원이 물건을 전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시킨 후 대금을 수령하여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간혹 배달 직원이 판매 대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있었다 [39]. 미국에서는 판매자가 AutoTrader.com과 같은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도용하여 eBay에 판매한다고 등록을 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지급 방법을 문의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자와 연결되어 있는 가짜 에스크로 서비스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 후에 구매자가 돈을 보내면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33] [24]. www.sos4auctions.com [37] 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형태 (에스크로, 판매, 선적전문 중 하나), 평가 (합법적인 사이트, 의심이 가는 사이트, 비합법적인 사이트), 현재 상태 (영업중, 웹사이트가 다운, 비영업중)의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을 보면 가짜 에스크로 서비스 회사와 합법적인 에스크로 서비스 사이트로 구분되어 있으며 50여 개의 가짜 에스크로 회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4].

2.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에스크로 서비스 규제의 배경

캘리포니아 주는 몇 개의 다른 주와 함께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회사를 오프라인의 에스크로 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에스크로 거래에 있어서 판매자, 구매자, 또는 에스크로 서비스 중에서 하나라도 캘리포니아 주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이 거래를 중재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주의 라이센스를 받도록 하였다 [35]. 이에 따라 가장 먼저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는 www.i-escrow.com (1999년 3월 라이센스 획득, 현재 사업 중단) www.escrow.com (2000년 3월 라이센스 획득)이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00년 3월 이후에 일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2000년 9월에 인터넷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27개의 에스크로 에이전트(회사)에게 라이센스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회사는 영업을 정지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27개의 회사 중에 6개는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

는 회사이고 13개 회사는 미국 내의 다른 주에 있는 회사였고 8개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에 있는 회사였다 [35] [25].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2000년도 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 중에서 이미 라이센스를 획득한 두 개의 회사 (www.i-escrow.com : 1999년 3월 라이센스 획득, www.escrow.com : 2000년 3월 라이센스 획득)와 라이센스 심사가 진행 중인 www.TradeSafe.com 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행정 명령에 따라 홈페이지를 없애거나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26].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다른 주에 있는 업체들도 행정 명령을 따라서 홈페이지를 없애거나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27] [28]. 또한 미국 본토 밖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www.ityustyou.com이 행정 명령을 따라서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나머지 업체들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주 정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9].

이후에도 캘리포니아 주는 계속적으로 에스크로 회사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여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02년 3월에는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도 웹사이트에 가짜 라이센스 번호를 게시한 엑스체인지 리시프로콜 서비스 (X-Change Reciprocal Services)에게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30]. 이후 외에 몇 개의 웹사이트에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장비를 판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연결된 구매자들은 판매자로부터 "Secure-Escrow.com을 사용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Secure-Escrow.Com의 웹사이트는 회사는 알라바마 주의 몽고메리에 위치하고 있고 "하드포트 에스크로 (Hardfort Escrow)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시하였다. 또한 하드포트의 웹사이트에는 "하드포트는 에스크로 회사 면허를 받은 회사이고 캘리포니아의 기업부 (Department of Corporation) 라이센스 번호 8237136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드포트 에스크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를 받은 회사가 아니었으며 "8237136"이라는 면허 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Secure-Escrow.com 회사에 등록한 구매자들은 네바다 주의 리노에 있는 은행의 "엑스체인지 리시프로콜 서비스" 계좌로 상품 대금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말에 따라서 상품 대금을 송금한 사람들은 이후에 상품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엑스체인지 리시프로콜 서비스가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속임수를 써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30].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2002년 11월에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한 www.myescrow.org와 secure.myescrow.org도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다 [31] [32].

3.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에스크로 서비스 법적 규제

저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직 에스크로에 관한 규제법이 제정된 나라는 없다. 캘리포니아 재무규정 (California Financial Code)의 섹션 17000부터 섹션 17702 [34]에서 정한 에스크로 법 (California Escrow Law, 이하 "에스크로 법"으로 부름)는 애초에는 표준화된 부동산 에스크로를 규제하기 위한 의도였으나 인터넷 에스크로 사기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001년 1월에 인터넷 에스크로를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다. 에스크로 법은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에스크로 법은 에스크로 사업자가 채권 (bonds)을 내야하고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고 감사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에스크로 법은 관할권이 있는 관계 당국에게 인터넷 에스크로 제공자들을 규제하고, 조사하며 관련 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에스크로 법은 회사가 소재한 위치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특히, 에스크로 법은 에스크로를 "거래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인 재화 (personal property 또는 동산) 나 서비스를 매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돈이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인터넷 대응물 (internet equivalence)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그 제3자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지정된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그 때가 되면 제3자가 정해진 수신인이나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에스크로 법은 캘리포니아 주안에서 에스크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주안에서 (within the state)"의 뜻은 에스크로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 안에 위치하고 있거나, 구매자나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주 안에 위치하거나, 에스크로 회사의 행위가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형성되고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크로를 업무의 일부로 다루는 은행, 신탁 회사 그리고 법률인 (bank, trust companies, and lawyers)은 위의 법적용에서 제외된다 [10].

외국 회사는 에스크로 법을 따르고 "회사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 기업 위원회 위원장 (Commissioner of Corporations)이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1].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원장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무허가 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서신 [36]을 보내서 에스크로 법을 따르거나 그러

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영업을 중지하도록 영업 정지 명령 [32]을 받게 된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안에서 영업하는 것을 중지하였다 [25].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에스크로 법은 에스크로 회사의 설립, 영업 규정, 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3].

1) 에스크로 회사의 설립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는 캘리포니아 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우선 라이센스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법인이어야 한다. 소유주나 직원, 피고용인 중에 적어도 한 명은 5년 이상의 에스크로 업무경력을 소유하여야 하며 과거 10년 동안에 부정행위, 사기, 위계나 다른 범죄와 관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무원, 감독자, 주주, 고용인으로 일할 수 없다 [12].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신청인은 회사의 정관과 세칙, 모든 감독자와 사무직원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모든 감독자, 사무직원, 주주와 관리자는 지문채취를 제출하고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사무직원은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13] 위원장은 신청서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14].

회사는 상시적으로 최소한 25,000달러의 유동 자산을 포함하여 최소 50,000 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신청자는 신청시에 25000달러의 채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첫해와 비교하여 회사가 다루는 에스크로의 전체 규모에 따라서 채권이 증가할 수도 있다. 에스크로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직원과 고용인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신청서를 내는 비용은 625달러이고 조사비용 100달러도 제출하여야 한다.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는 매년 28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위원장이 취소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갱신할 수 있다. 마감일이 30일 지날 때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며 60일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 되거나 라이센스가 취소될 수 있다 [16].

2) 에스크로 영업 규정

일단 회사가 라이센스를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a) 광고와 통신 (b) 기록 (c) 에스크로 자금 관리 부문에서 에스크로 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게 된다. 첫 번째에 관하여서는 에스크로 법은 회사가 거짓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는 허가 받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고 모든 에스크로 거래 절차 또는 에스크로 계약서에는 회사의 이름과 라이센스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않은, 즉 빈 칸을 채워 넣도록 되어 있는 형태의 에스크로 거래 절차는 금지되어 있으며 에스크로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기 전에는 누구도 에스크로 거래 절차를 수정 할 수 없다. 회사는 사무직원, 감독자, 주주, 관리자 또는 피고용인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기업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새로 고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문과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스크로 회사는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에스크로 회사 밖의 누구에게라도 에스크로에 서비스와 관련된 소개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 [17].

기록 관리에 관하여서는, 회사는 위원장이 에스크로 서비스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러한 자료들은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되어도 된다. 위원장은 어느 때라도 사전 통보 없이 자료를 검사할 수 있고 비용은 라이센스 소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라이센스 소지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포함한 보고서를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 대조표와 지난 해의 손익 계산서
- CPA의 보고서나 감사 의견서
- 회사가 CPA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 설명 이유서

위원장은 30일의 시간을 주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적절한 기간 내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18]. 에스크로 자금을 처리하는 규정은 에스크로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에스크로 자금은 은행 계좌에 예치되고 보관되어야 하며 에스크로 거래 절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라도 지불되어서는 안된다. 에스크로에 기탁된 모든 자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은행의 요구불 또는 가계 수표 계좌에 보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에스크로 자금에 관한 어떠한 의도적인 유용도 중죄에 해당되며 법에서 정한 벌금 외에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에스크로 자금의 유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라이센스를 발급할 때에 에스크로 법의 목적과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9].

3) 비리와 제재 조치

어느 때 이든지 관련 자료를 검사하는 것 이외에, 위원장은 에스크로 회사의 사무실, 영업 장소, 은행 계좌, 기록, 서류, 파일, 금고 등에 접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문회에 증인을 강제 출석 시킬 수 있는 소환장을 발행 할 수 있으며 책자나 다른 자료를 만들어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사가 자본이 충분하지 않거나, 채권을 필요한 만큼 확보하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회사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은 에스크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 게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장의 명령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청문회를 요청되지 않으면 위원장의 결정은 어떤 것이라도 최종 결정이 된다. 위원장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회사의 라이센스를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적정한 경우에 강제적 구제 명령이나 상환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

극단적인 경우에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이 재정적으로 파산을 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를 거부하거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면허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에스크로 영업을 중지시킨 후에 위원장은 사업을 대신 운영할 수 있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라이센스 소지자가 내야 할 돈을 징수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은 경우에 따라서 라이센스 소지자의 사업과 자산 또는 재산을 보전하거나 징수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재산 보전이나 징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에 사업을 해산하고 청산하는 것을 허락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청산을 담당할 관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관재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비용은 에스크로 회사의 자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21].

마지막으로 징계 규정을 보면, 의도적으로 에스크로 법 또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유죄가 판명 된 사람은 10,000달러 이하의 벌금(fine)을 내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이 두 가지의 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에스크로 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위반 1건에 대해서 2,500달러를 넘지 않는 벌금(civil penalty)을 내야 한다 [22].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에스크로 업체에게 공신력을 부여하고 에스크로 업체의 사기나 부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인 차원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규제 하는 것에 대하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미국의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국내와는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의 사기나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발행한 라이센스를 획득하도록 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인터넷 에스크로 사업자에 대하여 자격 요건 및 규제 사항을 법으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에 대하여 포괄적인 법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의 에스크로 규제에 관한 법률은 내용이나 구조면에서도 적절하고 에스크로 사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만들어진 법률로 보이며 국내에서도 에스크로 서비스에 관한 인증과 규제를 한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에스크로 법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여 왔

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형태이든 에스크로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때의 규제라는 것은 에스크로 서비스 사업자의 자격 요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등급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운영을 위해서 따라야 할 준칙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에스크로 서비스의 활성화는 인터넷 쇼핑몰의 에스크로 서비스의 의무화나 법제화를 통한 활성화 자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서비스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선행 또는 병행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전자상거래 고객들이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에스크로 서비스 자체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에스크로 서비스의 의무화와 에스크로 서비스의 규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진정한 전자상거래 발전의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1] 「금융 결제원」, "Escrow 서비스 동향 및 전망."
- [2] 김신곤, "우체국의 통합 물류 금융망 활용을 위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우정 정보』 2002년 봄, pp.1~20
- [3] 전자신문 2004년(a) 2월 20일
- [4] 전자신문 2004년(b) 1월 29일
- [5] 전자신문 2003년(a) 4월 15일
- [6] 전자신문 2003년(b) 4월 9일
- [7] 전자신문 2003년(c) 3월 31일
- [8] 전자신문 2002년 10월 17일
- [9] 정성원, 이창건, 이종호, "에스크로 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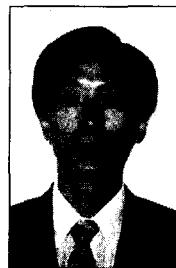
스 도입의 확대를 위한 개선된 에스크로 서비스 모델," 한국경영정보학회 2003 춘계 학술대회

- [10]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003, 17005.5, 17006
- [11]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008
- [12]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200-17201, 17209.3, 17414.1
- [13]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419
- [14]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209, 17209.2, 17414.1
- [15]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202-17206
- [16]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207-17600
- [17]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210.2-17213, 17403.2-17403.4, 17420-17421
- [18]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403.5-17408
- [19]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215, 17409-17414
- [20]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415, 17423, 17601-17613
- [21]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621-17654
- [22] California Financial Code section 17700-17701
- [23] Christopher Neumeyer, "Should Taiwan Enact Escrow Legislation in Order to Promote E-Commerce and Protect Online Buyers and Sellers? (Part 3)," <http://www.elitelaw.com/09SearchNewsletter/EN/>
- [24] http://www.cbc.ca/stories/2002/10/28/Consumers/eBayfraud_021028
- [25] <http://www.corp.ca.gov/pressrel/nr0013.htm>
- [26] <http://www.corp.ca.gov/pressrel/nr0013ca>

- pdf
- [27] <http://www.corp.ca.gov/pressrel/nr0013.pdf>
 - [28] <http://www.corp.ca.gov/pressrel/nr0013att.htm>
 - [29] <http://www.corp.ca.gov/pressrel/nr0013f.pdf>
 - [30] <http://www.corp.ca.gov/pressrel/nr0204.htm>
 - [31] <http://www.corp.ca.gov/pressrel/nr0211.htm>
 - [32] <http://www.corp.ca.gov/pressrel/nr0211.pdf>
 - [33] <http://www.cronaca.com/archives/000196.htm>
 - [34] www.pianofinders.com/Escrow/CaliforniaEscrowLaw.htm
 - [35] <http://www.pcworld.com/features/article/0,aid,16810,00.asp>
 - [36] <http://www.secure-commerce.com.au/california.htm>
 - [37] 현재는 연결이 되지 않음. 최근 방문 일자는 2003년 9월이었음.

- [38] http://www.whoismall.com/html/eBoard/pbbsView.phtml?bbsid=f_ecnews&nid=326
- [39] <http://www.zdnet.co.kr/ecommerce/buildcase/article.jsp?id=35721>

■ 저자소개



김 정 곤

저자는 1982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9년과 1997년에 각각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와 Texas A&M University에서 전기공학과 석사학위와 전기 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1998년부터 현재 조교수로 있는 한세대학교의 정보통신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저자의 현재 연구 관심 분야는 전자상거래,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에스크로 서비스의 규제에 관한 분야이다.